

영주시 공고 제2024 - 499호

「영주시 주차장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5일

영 주 시 장



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 인용 조문의 개정이 신속히 반영되지 않아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며,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를 저해함
- 나.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용 조문 정비가 필요함

2. 주요내용

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3조제3항제7호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교통행정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36132 경북 영주시 시청로 1

받는사람 : 영주시장(참조 : 교통행정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843

E-mail : sjl3927@korea.kr, FAX : (054)639-6829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7호 중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”을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2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차량</p> <p>8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 제58조제11항----- -----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영주시 주차장 조례안
검토사항	
주요내용	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연락처	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